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방안

김 갑 유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현재상황

국내기업의 국제거래가 활발하여짐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의 국제중재도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다.

국내기업이 국제중재에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현저히 증가된 것은 1997년 금융위기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이후 국내기업의 M&A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거래가 현저히 증가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들이 당사자간에 체결된 중재계약에 따라 국제중재건으로 발전하면서 국내기업의 국제중재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중재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C중재의 경우 최근 5여년간 국내기업은 아시아지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ICC에서 많이 당사자로 등록된 국가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건수나 청구금액이 줄어들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처리된 국제중재건은 2002년에 47건에 총청구금액은 4702만달러, 2003년에는 38건에 6933만달러, 2004년에는 46건에 5478만달러로 평균 연간 약 44건 청구금액기준 평균 연간 약 5700만달러의 국제중재건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최근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중재건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한상사원의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국내당사자가 외국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2004년의 경우 두 경우가 동등한 비율을 나타낼 정도로 외국당사자의 국내당사자에 대한 국제중재건이 증가하였고 건당 청구금액에 있어서도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연간처리하는 전체중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정도이지만, 그 청구금액에 있어서는 전체중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제중재에서의 건당 청구금액이 국내중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고액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있어서 국제중재의 활성화는 전체적인 중재사건의 활성화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중재사건의 증가는 중재합의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쟁해결조항을 확정할 때, 소송과 중재간의 선택도 문제이지만 국제중재의 경우 어느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계약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어느 중재기관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중재기관에서의 중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당사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일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일부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국내중재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절차진행관행과는 달리 ICC중재나 다른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와 동일한 형태로 국제절차¹⁾가 진행되고, 중재인에 대한 보수지급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ICC중재나 다른 국제중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금액이 큰 금액이고 양측당사자가 큰 회사들인 경우 또한 중재인들이 국내외의 유명한 중재인들로 구성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대한상사원 국제중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국제중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대한상사원에서의 국제중재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도전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필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도전과제

1. 중재인의 선정방식

ICC중재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전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절차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지만,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1인 중재의 경우에는 사무국이

1)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국내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인데 비하여 ICC, LCIA, AAA등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미리 중재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 증거서류의 교환과 주장서면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심리방식으로 증인신문과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중재인을 선정하고 3인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자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하되 당사자가 선정하지 아니하면 사무국이 그 국가의 National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중재인을 선임한다.²⁾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절차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지만, 당사자간에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이든 3인 중재판정부이든 불문하고, 중재원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선정은 국제중재의 경우 우선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명단 중에서 10명의 중재인후보를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30일이내에 후보자명단에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사무국에 반송하면 그 당사자들에 의하여 표시된 우선순위를 합산하여 가장 낮은 숫자가 되는 후보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인 중에서 선정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을 그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인선정방식에서는 AAA와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즉, AAA의 경우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분하여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3인중재의 경우 당사자에게 1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중재원의 규칙에서는 3인 중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따로 미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중재인후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중재원은 AAA를 따라 중재인 후보명단을 사무국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AAA의 경우에는 15명의 후보자가 주어지는데 비하여 우리 중재원은 10명의 후보명단을 제공한다. 후보명단이 작성되면 양측 당사자가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중재인 선정에 관여하게 된다. 반면, ICC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중재인명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중재인후보명단을 제공하는 일이 없이 National Committee로부터 추

2) National Committee는 ICC가 미리 국가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 경우 National Committee가 그 국가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적절한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중재인이나 단독중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사무국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제3국의 National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National Committee가 추천한 중재인후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사무국은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의 National Committee에게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천을 받아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무상 현재의 우리 중재원의 중재인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3인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은 통상 적어도 자기가 선정한 1명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후보명단의 제시는 중재인후보를 미리 명단에 등재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무국이 제시한 10명의 후보명단에 그러한 적절한 사람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명단에 없지만 유능하고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점에서도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과정에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10명의 중재인후보명단에 각 당사자가 표시한 우선순위를 합산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한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한쪽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8번과 9번 순위로 정한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결과가 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자신이 1번과 2번으로 정한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³⁾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중재인단이 구성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장중재인의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음을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중재원에서의 국제중재사건에서 당사자가 중재인선정과정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판정취소사유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2. 중재인의 수당

3) 중재인후보순위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후보	A	B	C	D	E	F	G	H	I	J
당사자A	10	9	8	7	6	5	4	3	2	1
당사자B	4	1	2	3	5	6	7	8	9	10
	14	10	10	10	11	11	11	11	11	11

중재제도의 성공여부는 공정하고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권한과 재량은 어떠한 법원의 판사보다 더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중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재인들은 중재인만을 전업하는 경우가 많고 중재인업무만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보수산정방식은 중재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ICC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ICC 사무국이 중재인보수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LCIA나 AAA의 경우에는 각 중재인들이 자신의 시간당 청구요율을 적용하여 중재인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중재원의 중재인수당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그 금액이 ICC, LCIA, AAA 등 다른 국제중재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인들은 통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공익봉사차원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중재인보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재인들이 그들이 다른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수만을 받고 중재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실제로 많은 경우 유능한 중재인들이 중재인으로 선정되기를 꺼리거나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있는 것도 염연한 사실이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들에게 별도의 추가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보수의 지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중재인은 중재인직을 수락할 때까지 추가보수의 지급여부나 그 수준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지급되는 추가보수도 다른 국제중재기관에서 지급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중재언어의 선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0조는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는 한국어로 진행하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 중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판정문도 국문과 영문이 동시에 작성이 되고 두가지 판정문이 모두 정본으로 취급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실무상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당사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중재를 진행하면서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다. 중재절차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중재인과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모두 효율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⁴⁾

둘째,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제중재의 경우 한국어로 중재기관과 교신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셋째, 판정문이 한국어와 영문으로 모두 작성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 한국어본이 우선하는 것도 실무상으로 문제가 있다. 중재인들이 모두 외국인이거나 판정문을 작성하는 의장중재인이 외국인인 경우 판정문을 작성하고 확인한 외국중재인들은 영문본만을 보고 확인할 것인데, 해석에 있어서는 한국어본이 우선하게 된다면, 영문본을 번역한 한국어본에 잘못이 있을 경우, 중재인들이 당초 작성한 영문본과 다른 내용의 판정이 집행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다.

4. 중재절차와 심리기일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우리 중재원의 진행방식은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의 진행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우리 중재원의 중재절차의 진행은 사무국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사무국이 사건을 호명함으로써 심리절차를 개시하고(규칙 35조 제1항), 중재기록도 사무국이 관리한다. 통역이나 번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도 사무국이며(규칙 제30조) 심리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사무국이 관여한다.(규칙 제32조). ICC를 비롯한 다른

4)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거의 중재인들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재기관에서는 사무국은 심리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며 중재기록의 관리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우리 중재원의 경우, 중재의 심리는 거의 대부분 중재원내부의 심리실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경우 중재장소가 매우 다양하고⁵⁾, 실제 대부분의 중재의 심리도 중재기관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 혹은 중재인이 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다만, 우리 중재원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원외부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5. 중재심리시설과 속기

국제중재에서는 통상 양측 당사자가 많은 양의 주장서면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중재판정부에서는 이를 서류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심리를 위한 기록을 별도로 제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이러한 기록들은 바인더 형식으로 작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개의 바인더가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서류들을 심리기일에서 수시로 보기 위해서 중재판정부가 이를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책꽂이나 기타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 중재원의 심리실은 이러한 목적에서 보면 그 좌석의 배치나 시설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국제중재에서는 속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리절차의 내용을 모두 속기로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영문속기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속기사와 속기시설을 빌려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III.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활성화 방안

이상에서 우리 중재원에서의 국제중재에 있어서 실무상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았다. 아래에서는 우리 중재원이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

5) 예컨대, ICC 중재의 경우 ICC중재법원은 파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중재장소로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런던, 쥐리히, 싱가포르, 홍콩, 서울 등의 다양한 장소가 이용된다.

기로 한다.

1. 중재인 수당의 현실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재원이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중재인 수당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 수당이 높아지면 당사자의 중재비용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ICC중재에서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중재인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LCIA나 AAA의 경우처럼 시간당 청구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러한 시간당 청구방식은 우리나라의 중재인들이나 당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고, 실무에 있어서 시간당 청구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ICC중재는 고가의 비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중재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유능한 중재인을 확보하여 그 만큼 신뢰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액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중재인 보수를 대폭 현실화하여 유능한 중재인들이 우리 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중재인의 확보와 지정방식의 개선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중재인의 명단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중재인들을 등재하고 이들을 우리 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중재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중재인선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 중재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1명씩의 중재인을 직접 선임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의장중재인의 경우에도 먼저 당사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에 중재원이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는 중재인후보명단의 작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제3국인 중에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대표적인 중재기관과 협조하여 그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중재인후보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 중재원이 표준중재조항에 당사자가 1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당사자가 선정한 두 명의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정하는 방식의 중재조항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재규칙을 위와같이 개정하고, 중재규칙의 개정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재법상의 중재인선임에 관련한 규정⁶⁾도 함께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중재언어의 지정

국제중재에 관한 한, 중재언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중재판정부가 다른 언어의 사용이나 공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판정문도 그렇게 결정된 언어로만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어본을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하고 한국어본이 우선한다는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중재절차의 국제적기준 도입

중재절차가 국내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구두변론주의와 집중심리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절차가 우리 중재원의 중재절차에서도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미리 일정표를 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장서면과 증거서류를 교환한 후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3일 내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실제로 우리 중재원에서 이러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생겨나고 그러한 예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을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6) 중재법 제12조로는 3인중재의 경우 당사자간의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중재인들이 30일 이내에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며,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중재심리시설의 보완

중재심리시설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재기록의 관리방식이나 보관설비의 보완, 중재인과 당사자의 좌석배치의 조정 등 세심한 배려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 통역과 속기사의 확보

국제중재를 위해서는 통역과 영문속기사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통역요원과 영문속기사 및 그 시설을 확보하여 국제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다른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에 대한 지원업무

중재심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갖추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뿐 아니라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 중재도 우리 중재원의 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 연간 여러건의 ICC, LCIA 등의 규칙에 의한 국제중재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대부분 호텔을 이용하고 설정이다. 중재원이 이러한 시설과 인적 지원을 확보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나 중재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8. 홍보

국제중재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중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에 중재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여러 중재기관들이 난립하여 경쟁하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더 유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중재제도는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아니하여 외국회사들이 이를 이용하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중재제도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제도로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V. “서울을 아시아지역의 국제중재센터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의 국제중재가 활성화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서울이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중재센터 역할을 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북경과 도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의 중립국으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국가이면서 같은 한자문화권의 아시아국가라는 점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관여된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지로서의 제3중립국으로서 한국은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여건을 잘 활용하고 국내에서 국제중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에 있어서의 여건을 확보해 나가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중재를 서울로 끌어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서울은 아시아지역의 국제중재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